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9. 8 선고 2023가단4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8. 18.

판 결 선 고 2023. 9. 8.

## 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2022. 10. 21. 한 협의분할을 24,787,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4,787,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2016. 3. 29. D를 상대로 “D는 원고에게 9,500,030원과 그 중 7,505,631원에 대하여 2016. 4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32,900원을 지급하라.”는 지급명령을 받았고, 그 지급명령은 2016. 4. 9. 확정된 사실, G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22. 10. 21. 사망하여 D와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, D와 피고는 D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협의분할하고 2022. 12. 5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이 사건 부동산에 2023. 1. 4. 채권최고액 106,260,000원,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23. 1. 19.(이 사건 소 제기일) 기준 24,787,2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2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와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4,787,23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4,787,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광열